

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

신고번호

건축주

대지위치

지번

※ “지번”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전체 개요	건축면적 m ²			연면적 합계 m ²		
동별 개요	동별	구조	용도	건축면적(m ²)	연면적(m ²)	지상층수

존치기간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 · 제15조의2	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